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7조제2항제1호	60	80	1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표지의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7183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표지 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60만원, 2차 위반 시 8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환경부장관 조 명 래

◉대통령령 제3107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환경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⑥ 법 제1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측정대행계약 실무의 개발·보급 촉진 및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2. 측정대행업자의 측정대행계약에 관한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

⑦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2.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사업비의 운영 및 집행의 적정성

⑧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4(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 ①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13조의5(종전의 제13조의2) 제1항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을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0조제1항”을 “제30조제1항 전단”으로,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토양관련 전문기관”을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제14조제1항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4호”를 “제4호, 제4호의2”로 한다.

제17조의3 중 “별표 1”을 “별표 3”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 중 “별표 3과”를 “별표 5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5제1항제3호・제4호・제7호・제8호・제10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5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기술자격의 정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
   나.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방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13조의3제8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법 제16조의2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2제5항제1호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16조의2제5항제2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의2제5항제4호	시정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자가 환경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184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을「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사업장 분류기준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등으로 정하고,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한국환경공단 및 측정대행계약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078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0일”을 “30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해당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제외한다)에게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유급휴가가 아닌 경우로서 휴가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를 주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50명 미만인 사업주(이하 이 호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라 한다)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

나.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이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속하여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훈련

다. 우선지원대상기업사업주등으로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이나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총 3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8시간 이상 실시하는 훈련